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과 학생지도에 관한 내부규정

제정: 2014. 10. 08.

개정: 2017. 02. 01.

개정: 2017. 08. 23.

개정: 2018. 04. 10.

개정: 2019. 01. 03.

개정: 2020. 03. 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산대학교 학칙에 의거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과 학생의 학업, 교내외 생활,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미디어문화학과 학생”이란 미디어문화학과에 학적을 둔 재학생을 말한다.
- ② 이 지침은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과 학생에게 적용된다.

제2조(책임지도교수) ① 학과장은 군산대학교 책임지도교수제 운영지침에 따라 학생별로 책임지도교수를 배정한다.

- ② 신입생, 편입생, 전입한 학생 등은 지도교수를 지정받아 교육, 학사 등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③ 기타사항은 군산대학교 책임지도교수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3조(졸업논문 및 졸업작품 심사) ① 졸업예정자는 논문 또는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졸업논문(작품)을 제출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졸업에 필요한 전공 학점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졸업 학기까지 이수할 수 있는 자
2. 졸업논문(작품)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 자

② 학과에서 공지한 일자까지 완성된 형태의 결과물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한 경우만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논문의 경우 논문과 논문의 요약문을 함께 제출하며, 작품의 경우 작품과 기획구성안을 함께 제출한다.

③ 졸업논문 및 졸업작품의 심사는 2차에 걸쳐 실시한다. 지도교수 이외 1~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논문 주제(또는 작품) 전공영역의 교수를 우선 배정한다.

④ 논문 및 작품의 수준은 각호와 같은 평가항목들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1. 논문 및 작품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과 작품 모두 참고자료 조사를 수행하고 자료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2. (논문의 경우) 논문형식의 적합성, 내용의 독창성, 논리 및 표현의 적절성, 참고문헌의 충실성 등
3. (작품의 경우) 작품의 완성도, 작품 형식의 적절성, 작품의 독창성 등
4.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통해 논문(작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미반영 시 논문(작품)은 불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다음의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졸업 예정 학생의 졸업논문(작품) 발표심사를 생략하고, 2차 심사만을 따로 진행할 수 있다.

1. 정규직 또는 4대 보험 가입업체에 취업

2. 학사 장교 및 ROTC
3. 대학원 진학 (단, 진학하지 않으면 졸업을 유예한다)

제6조(장학금) ① 장학금 배정은 학년별 인원수에 비례하여 성적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생 선정 및 지급은 군산대학교 장학금 규정을 따른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7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을 책임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책임지도교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휴학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집안 사정(학부모 동의서 첨부)
 2. 군입대(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3. 질병(진단서 첨부)
 4. 어학연수(어학연수 계획서 첨부)
 5. 기타 학과장이 인정하는 사유
- ② 휴학원은 책임지도교수 상담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과장에게 휴학원 접수 1주일 전 제출해야 한다.
 ③ 학과장은 휴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과 회의를 통해 휴학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④ 휴학에 관한 규정은 군산대학교 학칙을 따른다.
 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8조(학과행사) 미디어문화학과 학생은 학과의 공식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제9조(현장실습) ① 기회균등 차원에서 방학 중 현장실습은 3~4학년 중 1회, 학기제 현장종합실습은 4학년 2학기(혹은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1회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현장실습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 신청 학기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3학년은 수강 신청 취소 마감일 기준 전공 12학점(현장실습 교과목 제외) 수강 시 신청할 수 있다. 단, 개설교과목이 4개(12학점) 이하일 경우 학생 본인의 학년에 개설되는 전공 교과목 모두를 이수해야 한다. 4학년은 전공 6학점 이상(현장실습 교과목 제외) 신청한 경우 학과 회의를 통해서 현장실습 가능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현장실습 수강 직전 학기에 전공 분야 교과목을 최소 9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균 B^o(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 ③ 현장종합실습(학기제)은 4학년 1학기에 4학년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현장종합실습(학기제)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하며, 학과 회의에서 성적, 관련 교과목 이수, 성실성 등을 참조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④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제10조(기타) 미디어문화학과의 학생들에 대한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것은 학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침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학과 회의를 통하고, 개정된 내용은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지침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